

라. 시·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‘등록사업자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사항’ 보고 조항을 삭제함
(시행규칙 제19조)

마. 법률에 국토교통부장관의 ‘보고 및 감독’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제23조 삭제(시행규칙 제23조)

3. 의견제출

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[http:// opinion.lawmaking.go.kr]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
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
우편번호 : 30103
- 전자우편 : sjyoo8285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661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-정보마당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(전화 044-201-3454, 팩스 044-201-566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750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6월 8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흥익산업개발 주식회사(정연용)

나. 전화번호 : ① 02-2109-8775

2. 명칭 : 기능성 박테리아를 활용한 생태 유지관리형 단면 보수 공법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토목구조물 보수보강(포장 보수제외) /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

<기술의 요지>

제안 기술은 생·화학적 열화 환경에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(하수관 및 하수 암거)의 생태학적 보수·보강을 위한 BT(바이오 기술)와 콘크리트 기술을 융합한 보수재 제조 기술이다. 이 기술에서는 박테리아가 자기세포 보호를 위해 형성하는 글라이코 칼릭스 막을 이용하여 구조물 내부에서 황산염 환원 세균들의 성장을 억제하고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열화인자의 접촉을 차단하여 구조물의 생·화학적 부식 저항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단면 보수 공법임.

<범위>

세포 보호를 위해 글라이코 칼릭스 막을 형성 박테리아의 분리·선별 및 최적 배양기술, 굳은 콘크리트(보수재) 환경에서 박테리아의 성장성 향상을 위한 박테리아 성장처 형성기술 및 위 기술을 포함하는 단면 보수재(모르타르) 제조기술과 응결시간 및 보수두께 제어가 가능한 시공기술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5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소방청공고제2020-80호

「의무소방대 관리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8일

소 방 청 장

「의무소방대 관리규칙」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 첨부서류 중 「전자정부법」 제4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불편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 시 첨부서류 삭제(안 제72조 제1항 제2호및제3호)

나. 의무소방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 확인 요청 시 첨부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도록 함 신설(안제72조 제2항)